

2026년 전문무역상사 수출촉진 지원사업 공고

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전문무역상사의 수출대행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무역업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을 시행합니다. 전문무역상사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- 아 래 -

□ 사업 개요

- (목적) 중소·중견기업 제품을 수출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의 시장개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무역업계 수출 촉진
- (방법) 아래의 수출촉진 프로그램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, 선정 되면 자율적으로 진행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 정산

순번	프로그램	내 용
1	수출 물류비 지원	항공, 해상, 항만, 공항, 내륙운송비 및 기타 부대비용
2	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	수출용 외국어 홍보영상, 카탈로그 제작 지원
3	외국어 홈페이지 제작	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및 업그레이드 지원
4	해외바이어 DB 구매	온/오프라인 바이어 정보 구입 및 구독
5	이마켓 플레이스 활용	해외 B2C, B2B 판매 사이트 가입/사용료 지원
6	무역실무 능력 배양	온/오프라인 무역실무 강좌 수강료 지원
7	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	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·심사·인증·컨설팅비 지원
8	전문 컨설팅비	해외진출을 위한 법무·세무·회계 등 전문 컨설팅 지원
9	디자인 제작비	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디자인 개발 지원

- (지원규모) 신청기업 중 100개사 선정
 - ※ 1개사당 최대 250만원 한도, 집행금액의 80% 지원 (자부담 20%)
 - * 할랄인증 보유 기업은 1개사당 최대 300만원 한도, 집행금액의 80% 지원
(국내 할랄인증기관 및 해외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외 인증도 포함)
- (지원기간) 2026년 1월 ~ 2026년 11월 중 집행 완료된 수출촉진 활동
- (문의처) 전문무역상사 사무국 (02-6000-5576, 카카오톡 채널 「전문무역상사 사무국」)

□ 평가기준

-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유형에 따라 유형별 평가기준(60점) 및 공통평가기준(40점)으로 평가

※ 2026년에 신규 또는 재지정된 전문무역상사가 아닌 경우,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수

지정유형*	유형별 평가기준 (60점)	공통평가기준 (40점)	총점 (100점)
유형 ①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 (30점) + 최근 3년간 연평균 대항수출비중 (30점)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(20점) + 사업적합성(20점)	100점 만점
유형 ②	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(60점)		
유형 ③	전년도 매출액 (40점) + 해외 대규모 점포 수 (20점)		
유형 ④	전년도 국외 매출액·거래액 (60점)		
유형 ⑤	최근 2년간 해외정부/국제기구 직접조달 실적 (60점)		
유형 ⑥	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(60점)		
유형 ⑦	전문무역상사 지정기간 (50점) + 사업적합성 (50점)		

<유형 안내>

- ①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실적이 1백만 달러 이상 & 타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20% 이상
- ② 전년도 혹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액 1억 달러 이상
- ③ 해외 대규모 점포 수가 3개 이상이고, 전년도 매출액이 5백억원 이상
- ④ 전자상거래 수단을 1개 이상 운영, 전년도 국외 매출액 또는 거래액이 100만 달러 이상
- ⑤ 최근 2년 내 해외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직접조달 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⑥ 재외동포로서 직전년도 한국제품 구매실적 100만 달러 이상
- ⑦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

□ 분야별 지원 범위 (최대 250만원 한도, 집행금액의 80% 지원)

프로그램	지원 범위
① 수출 물류비 지원	□ 수출 물류비 - OCEAN & AIR FREIGHT CHARGE (항공/해상 운임 비용) - LOCAL CHARGE (관세법상 국내 소재 개항(국제항) 전부) - 국내 TRUCKING CHARGE (내륙 운송비용) □ 수출 부대비용 : 통관수수료, 적하보험, 검역비용, 세관검사비용, 해외창고보관료 · 풀필먼트(FBA) 이용료 · 현지내륙운송비(D조건) □ 중동 사태 대응 - 각종 할증료 · 체선료 · 지체료 · 반송비 등 지원 ※ 각종 부가가치세, 현지 세금 등은 기업 자부담
② 동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*	□ 외국어로 작성된 해외마케팅용 제품 카탈로그, CD 타이틀, e-카탈로그, 해외 홍보 동영상, 해외전시회 참가용 홍보 배너 ※ 본사명의로 제작하는 해외마케팅용 제품으로 한정하며, 제품매뉴얼 또는 제품설명서는 대상에서 제외
③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지원*	□ 해외마케팅용 PC 및 모바일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및 리뉴얼비 ※ 한글 홈페이지 유지/보수비 지원 불가
④ 해외바이어 DB	□ 해외바이어 DB사이트 가입·구독료, 신용조사 사이트 사용료

구입 지원	※ EC21, Kompass, 나이스D&B, Hoovers 등
⑤ 해외 B2C, B2B 사이트 사용 지원	□ 해외 B2B/B2C 역직구 사이트의 판매 계정 등록비, 가입비, 사용료 ※ 아마존, 티몰, 알리바바, 이베이 등
⑥ 무역 실무능력 배양 교육 지원	□ 온·오프라인 무역 실무 강좌 수강료 ※ 한국무역협회 아카데미, KOTRA 아카데미, 패스트 캠퍼스 등
⑦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	□ 620개**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, 심사, 인증 및 컨설팅*** 비용 - 국내외 할랄인증 획득 및 갱신비용 포함 ※ 정부 또는 기관,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인증에 대한 보조금 중복 수혜 불허
⑧ 전문 컨설팅비	□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무, 세무/회계, 관세, 노무 컨설팅 - 수출목적의 법률 자문 - 해외법인 및 지사 설립/운영 자문 -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클레임 해결지원 -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/회계 이슈 자문 -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세무/회계감사 - 관세 자문 및 관세관련 인증획득지원 * 품목별/업체별 인증수출자, AEO 등 ※ 전문 분야의 법적이슈를 제외한 경영 컨설팅 등은 대상에서 제외
⑨ 디자인 제작비	□ 수출용 제품디자인, 외국어 포장 디자인, CI 및 BI 개발 등 ※ 내수 또는 내수·수출 겸용 목적의 디자인은 제외

*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,3번 프로그램은 「정부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」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행하고,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증빙에 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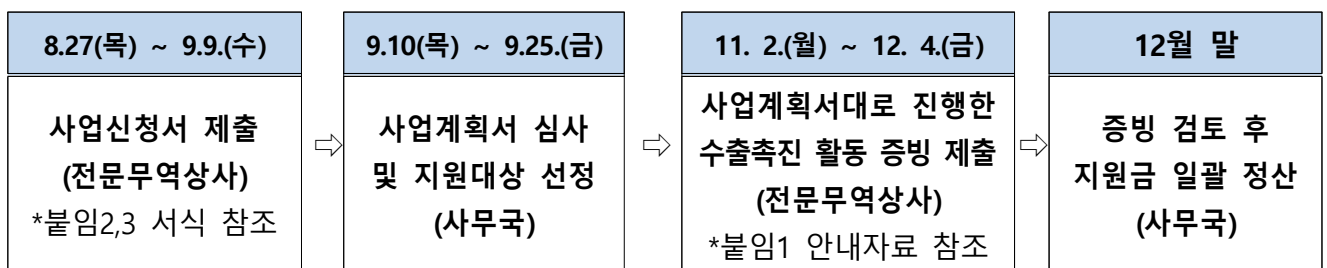
** 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은 '붙임4. 2026년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' 참조

*** 7번 프로그램의 컨설팅은 「정부수출지원 기반활용사업」에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「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」에 컨설팅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를 통해 시행하고, 해당 업체에서 발급한 증빙에 한정

- 수행기관 확인방법 : www.exportvoucher.com → 수행기관 → 수행기관 리스트 조회
- 컨설팅기관 확인방법 : www.smes.go.kr/globalcerti → 컨설팅기관 → 컨설팅기관 검색

****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'붙임1. 안내자료' 참조

□ 지원절차 및 일정



[붙임] 안내자료, 사업신청서,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 등